연말정산대상자 교직원 자료

2021귀속 연말정산



고양용현초등학교 오영미

국세청연말정산 서비스 안내

이용자	서비스	내 용	접 근 경 로
공 통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홈페이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청신고안내 → 개인 또는 법인 → 연말정산
	▪ 연말정산 관련 질의회신 및 판례 조회		국세법령정보시스템 (www.hometax.go.kr → 법령정보)
	▪ 인터넷 상담 및 회신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www.hometax.go.kr → 상담/제보)
근로자	소득공제 자료조회	▪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안내] ☎ 126 - 내선 1-5번
		▪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조회	현금영수증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안내] ☎ 126 - 내선 1-1번
	공제신고서 작성	▪ 간소화자료 선택 후 신고서 자동 반영	홈택스 → 조회/발급 → 편리한 연말정산 [안내] ☎ 126 - 내선 1-5번
	간편제출	▪ 작성된 공제신고서 및 증명자료 온라인 제출	홈택스 → 조회/발급 → 편리한 연말정산 [안내] ☎ 126 - 내선 1-5번
	신고결과 조회	▪ 과거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조회 ☞ '15~' 20년 귀속분 조회 가능 '21년 귀속분은 ' 22년 5월부터 조회 가능 ▪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조회	홈택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안내] ☎ 126 - 내선 1-3번
	안내책자 및 영상	▪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책자 ▪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동영상 ▪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 동영상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청신고안내 → 개인 또는 법인 → 연말정산
	프로그램	▪ 연말정산 모의계산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모의계산 → 연말정산 자동계산

연말정산 입력 및 서류 제출 일정

◆ 연말정산 입력 및 서류 제출 :
2022년 1월 18일(화)~2020년 1월 21일(금)까지
나이스 직접 입력 또는 PDF파일로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진행후 나이스 출력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기한내 미제출시 기본사항만 공제,
2022년 5월중 본인 주소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2022.1.15일 오픈예정) → www.hometax.go.kr

◆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팩스 또는 복사본은 안됨 (나이스 입력방법 참조)
→ 주소확인 : NEIS접속 → 나의메뉴 → 인사기록 → 기본사항 →개인신상
메뉴에서 본인주소지 확인 후 수정

① 근로소득공제신고서	교직원 전체 NEIS 출력물 제출 (자필서명 또는 날인)
②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교직원 전체 제출 (가족 변동사항 및 자녀감사 확인 서류)
③ 주민등록초본(본인 및 수당대상자) →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수당 지급대상 변경시 제출	직계존속(부,모) 가족수당을 받는 사람(주소변동사항포함)
④ 국세청 제공 자료 및 기타 증빙서류	교직원 전체 해당
⑤ 의료비공제신고서	해당자 NEIS 출력물 제출
⑥ 기부금공제신고서	해당자 NEIS 출력물 제출
⑦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 차입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서	해당자 NEIS 출력물 제출
⑧ 연금저축 소득공제명세서	해당자 NEIS 출력물 제출

※ 주민등록등본 발급안내 : 정부24 www.gov.kr
※ 건물등기부등본 발급안내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 발급안내 : 국토해양부부동산공지가격 알리미 www.realtypico.go.kr

◆ 의료비영수증 국세청에서 누락된 자료 제출하실 때 의사 및 약사의 도장이 있고 환자인적 사항도 누락되지 않게 확인하고 제출
→ 안경의 경우 시력교정용임을 확인하여 발급한 영수증 (시력교정용 기재)
→ 보청기, 장애인정구 구입비는 판매자가 사용자의 성명을 확인하여 발급한 영수증

NEIS시스템 주소 변경 방법

NEIS접속→나의메뉴→인사기록→기본사항→개인신상 메뉴에서 본인주소지 확인 후 수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 및 안내

◘ 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

→ 모든 항목이 금융회사,은행등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금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 근로자 본인의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꼭 필요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없이 이용 불가능

◘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음

→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이 해당 영수증을 발급기관을 통해 직접 수집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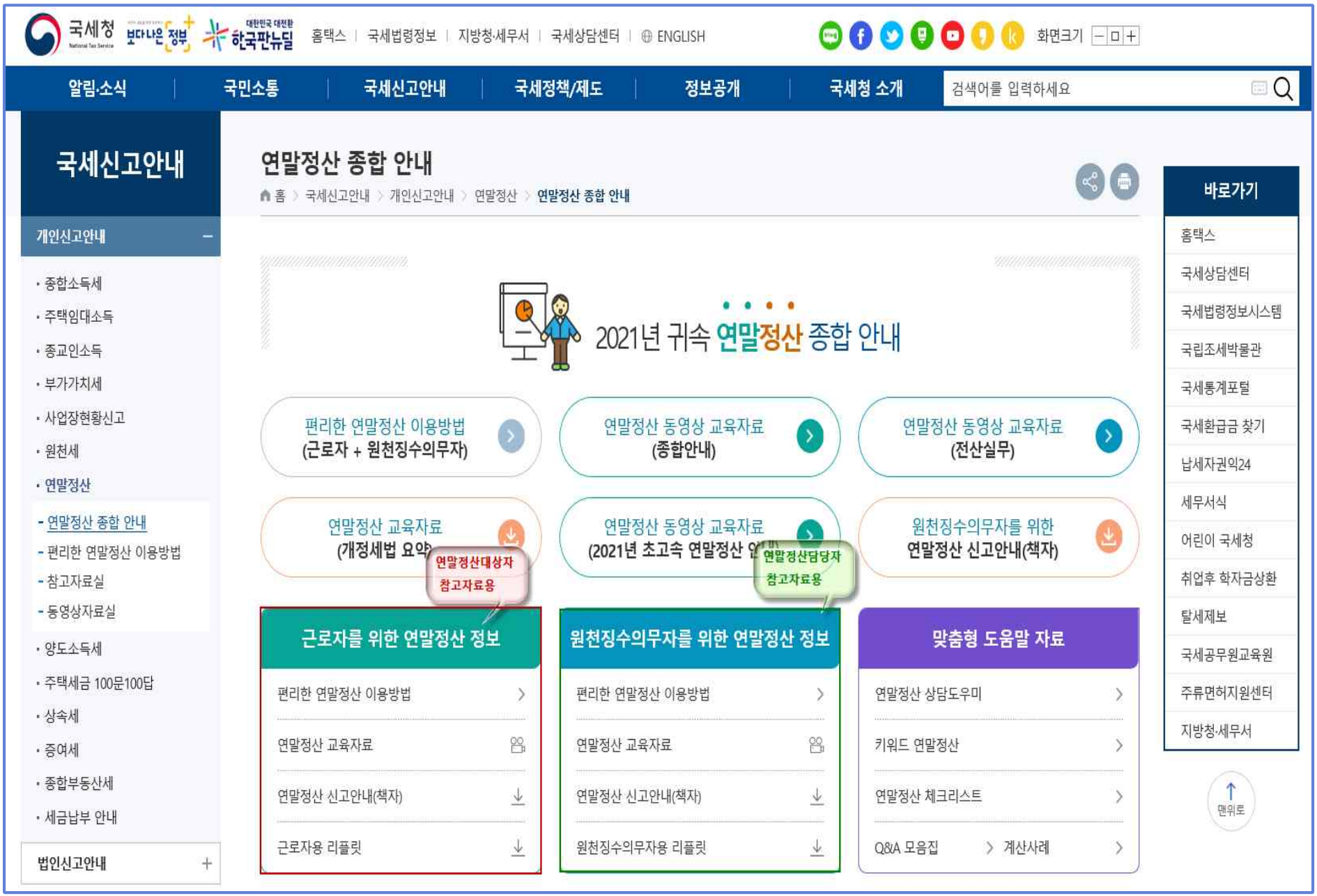
◘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 동의 필요

→ 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가능

→ 19세미만의 자녀는 동의절차 없이[자녀자료 조회신청]후 조회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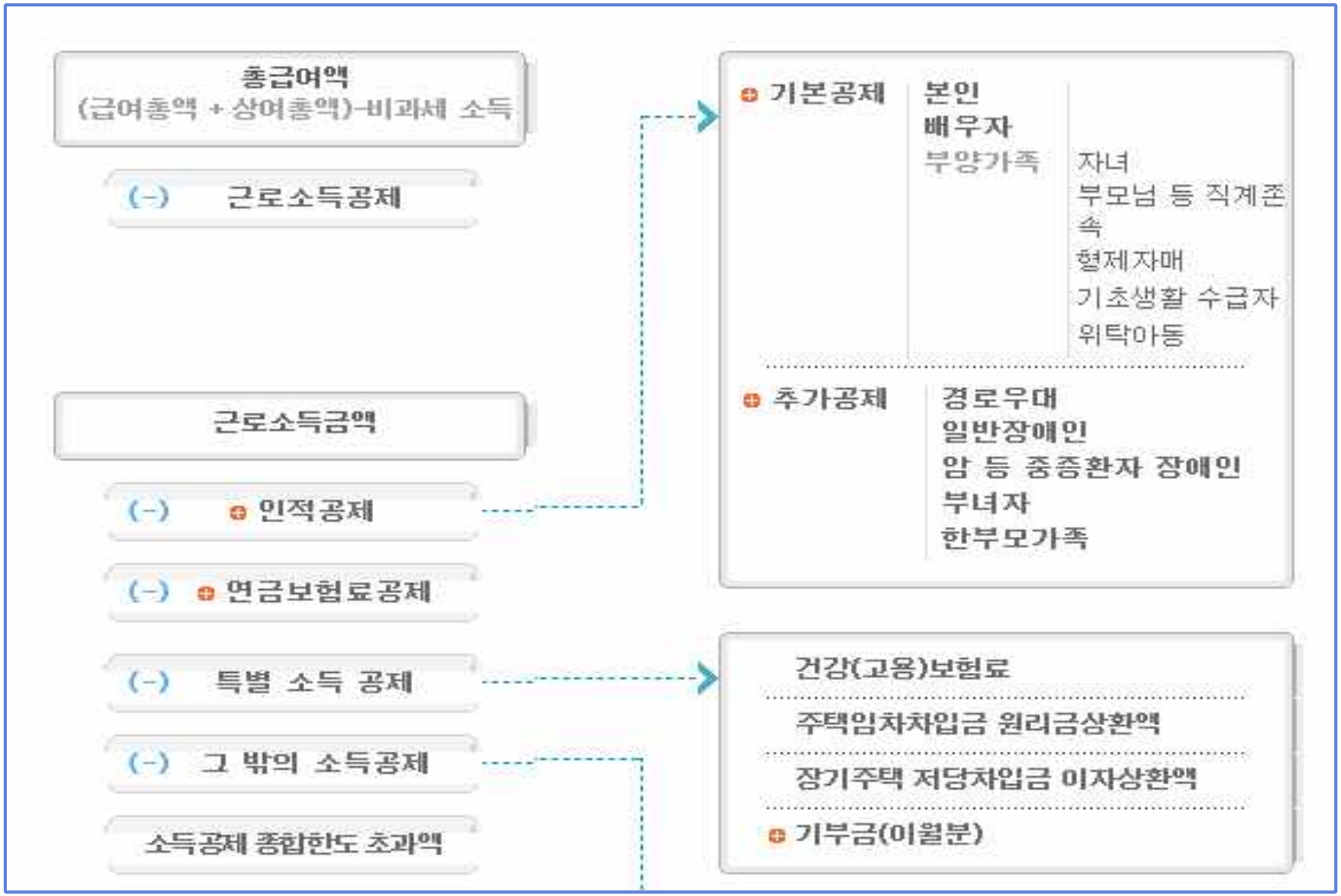
→ 부양가족 동의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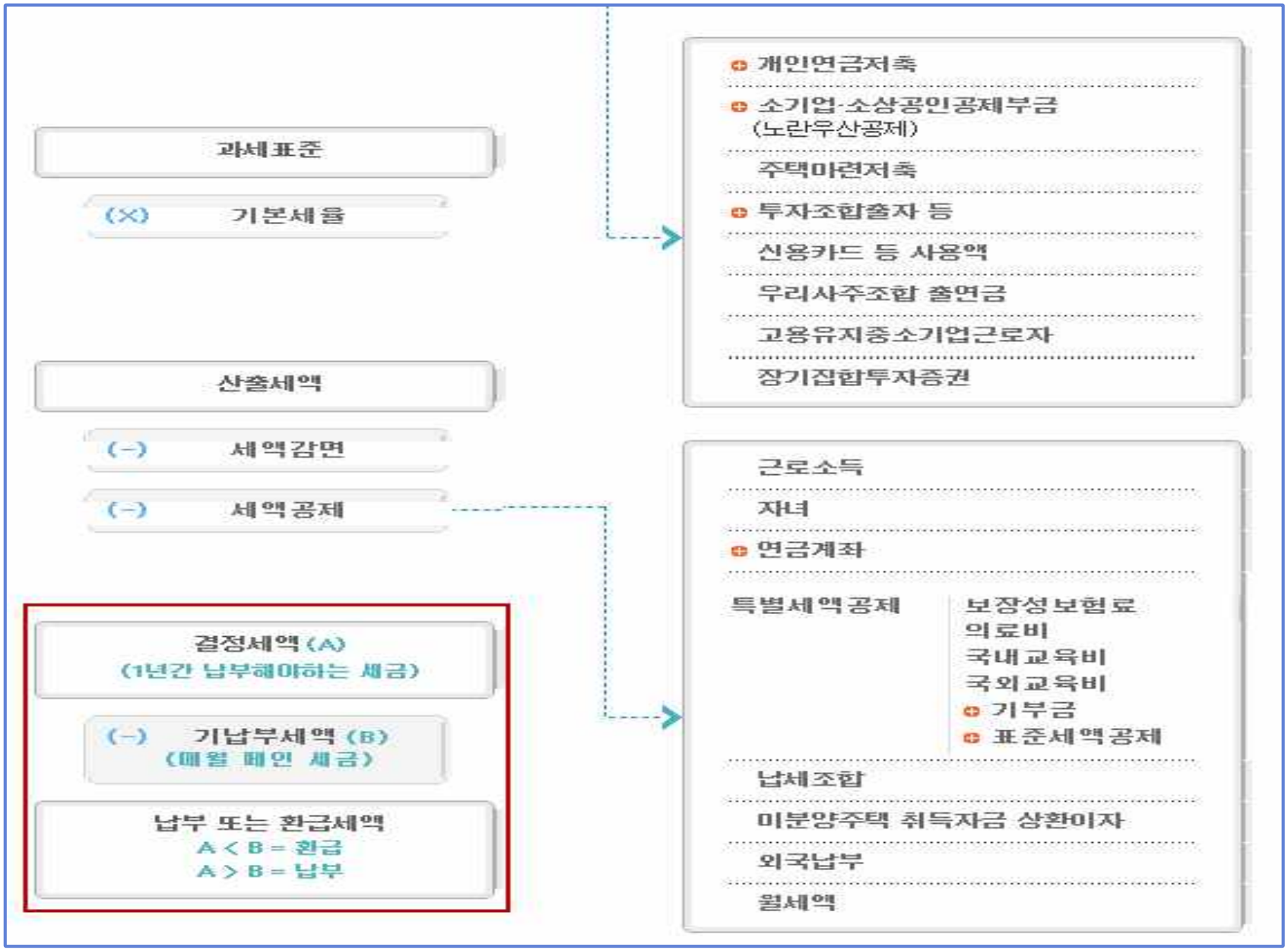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해설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과세표준
(X) 기본세율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결정세액(A)
(1년간 납부해야하는 세금)
(-) 기납부세액(B)
(매월 페인 세금)
납부 또는 환금세액
A < B = 환금
A > B = 납부
⊕ 개인연금저축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노란우산공제)
주택마련저축
⊕ 투자조합출자 등
신용카드 등 사용액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
근로소득
자녀
⊕ 연금계좌
특별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국내교육비
국외교육비
⊕ 기부금
⊕ 표준세액공제
납세조합
미분양주택 취득자금 상환이자
외국납부
월세액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요건표

구 분		공제요건				비 고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		
				주민등록동거	임시퇴거 허용	
기본공제	본인	×	×	×		
	배우자	×	○	×		
	직계존속	60세 이상	○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1961. 12. 31. 이전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20세 이하	○	×		2001. 1. 1. 이후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	○	×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	○	○	1961. 12. 31. 이전 2001. 1. 1.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	○	○	
	위탁아동		○			
추가공제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경로우대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				1951. 12. 31. 이전
	부녀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자				
연금보험료 공제		공적연금보험료의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 나이요건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당해 과세기간 중 공제기준일이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적용
*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구 분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	비 고
		나이요건	소득요건		
특별 소득공제	보험료	근로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 (건강·노인장기요양·고용보험료)			
	주택자금공제	-	-	○	본인만 가능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배우자, 부양가족 불입분 제외)			
	주택마련저축	세대주인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신용카드 등	×	○	○	형제자매 제외
자녀세액공제 (7세이상)		○	○	-	기본공제대상 자녀 (입양자 · 위탁아동 포함, 손자녀는 제외)
연금계좌세액공제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세액공제 가능(배우자, 부양가족 불입분 제외)			
특별 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	○	○	
	의료비	×	×	○	
	교육비	×	○	○	직계존속 제외 • 장애인특수교육비는 소득요건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가능
	기부금	×	○	×	기본공제대상자 •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만 가능
표준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표준세액공제(13만원) 적용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사례

◘ 근로소득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타 소득 있는 근로자로서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333만원 초과시 공제 불가능

→ 총급여 333만원-근로소득공제 233만원=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시 소득금액 총액과 상관없이 공제 가능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금액이 100만원 초과시 공제 불가능

→ 총수입금액 1,000만원-필요경비900만원=사업소득100만원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금액이 300만원 초과시 공제 불가능

→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는 종합소득신고를 할지 선택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공제 가능(분리과세)

◘ 연금소득 : 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이 연 5,166,66원 (연금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 · 퇴직연금)의 총 연금액이 총 연금액이 연1,200만원 초과(종합소득 합산신고대상)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퇴직소득 : 퇴직급여액(비과세 제외,=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시 공제 불가능

◘ 양도소득 :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이 100만원 초과시 공제 불가능

※ 여러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면 공제 불가능

→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하면 공제 불가능

◘ 연말정산하는 근로자(국세청 간이세액표에 의거 매달 원천징수하는 자)

근로자인 경우, 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이 소득금액입니다.
2015년 부터는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득금액 150만원(총급여 500만원)이하인 경우 부양가족공제, 신용카드등사용액소득공제, 교육비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 뿐 아니라 각종 소득공제가 안 됩니다.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단 의료비공제는 나이나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위해 지급된 금액이 공제되므로 부양가족의 소득이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4년까지는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대상이 됩니다.
2014년도에는 근로소득공제가 조정됨에 따라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하는 총급여액은 3,333,333원 이고, 그 이전에는 총급여액 500만원입니다.

◘ 일용직 근로자

세법상 일용직근로자는 건설공사에서 1년 미만으로 근무하거나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용직근로자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일용직)은 납부 세금이 건당 1,000원 미만이면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소액부징수)

일용직 소득세 계산 방법: (일당-15만원)×2.7 % 로 계산

1) 하루 일당 187,000 이하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187,000-150,000)×2.7% = 999원 (1,000원 미만이라 징수 안함)
   납부할 세액 없음
2) 한달에 돌아서 받는 경우(일정기간으로 받는 경우)는 소득세가 누적이 되어 천원 이상이 되므로 같은 일당이더라도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999원×30일 = 29,970 원이므로 29,970원 1,000원 이상이므로 소득세 납부 대상

◘ 공무원연금을 받는 경우

① 2001.12.31 이전에 퇴직한 경우:
ㅡ 연금소득이 비과세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2002.1.1이후에 퇴직한 경우: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는데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액(과세제외되는 연금 및 비과세연금을 제외한 과세대상 연금소득)에서 연금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2013.1.1.이후 연금수령분부터는 공적연금은 무조건 종합과세 되므로 연금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님의 연금소득금액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내 연금보기→로그인→연금정보→연금과세→자녀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여부)
에서 확인하거나, 공무원연금공단(1588-4321)에 전화로 문의 확인 가능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 장애연금 · 장해연금 · 상이연금 · 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은 비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아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자 및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이자 ·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이하면 분리과세소득에 해당되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초과하지 않는 부양가족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뺀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으면 안 되고, 대부분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추징사례] 매년 연말정산 때 아버님 인적공제 받음. 2013년 말에 2011년 귀속 과다공제로 75만원 추징당함.

→ 추징사유 : 2011년 아버님이 4대강사업으로 토지 일부 수용, 보상금으로 400만원 받아 양도소득 발생

◘농업소득이 있는 경우

논, 밭 농사 등 작물재배업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아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 맞벌이 부부란?

부부가 모두 총급여 500만원 초과(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근로자인 부부를 가정

공제항목	맞벌이 배우자	배우자 외 부양가족
기본공제	총급여 500만원(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 불가능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배우자포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부 중 1인이 공제 가능. 다만, 맞벌이 부부 각각 공제 불가능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는 추가공제 불가능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를 적용 받음
자녀 세액공제	–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서 배우자가 자녀세액공제 불가능
보험료 세액공제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부 모두 공제 불가능 → 다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 가능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받는 경우 부부 모두 보험료 공제 불가능
의료비 세액공제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은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 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이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능	
기부금 세액공제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가 공제 불가능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 (결재자 기준이 아님)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 부양가족 공제 등을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

◘ 일반적인 경우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이 유리

→ 단,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부부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

◘ 특별세액공제 중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액3% 초과)와 특별소득공제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 25% 초과)의 경우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한 경우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 의료비는 나이, 소득에 상관없이 지출한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고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부부의 의료비는 한 쪽에서 몰아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데 일반적으로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가 공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사례] 남편 : 총급여 5,000만원/의료비 100만원
아내 : 총급여 3,000만원/의료비 150만원

→ 각각 공제할 경우 남편 공제액 0원
아내 공제액 60만원으로 지방소득세 포함 66,000원 환급

→ 남편이 모두 공제받을 경우 공제액 100만원으로
지방소득세 포함 165,000원 환급

→ 아내가 모두 공제받을 경우 공제액 160만원으로
지방소득세 포함 264,000원 환급

• 아내가 부부의료비 250만원을 모두 공제받는 것이 가장 유리

<맞벌이부부 의료비는 부부의료비만 서로 공제가 가능하며 그 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는 쪽에서 공제받아야 한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택스 자료 받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이용하기
(https://www.hometax.go.kr)



안녕하세요! 국세청 홈택스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의 일부 서비스(이용안내/민원상담 등)를 제외하고는 **로그인을 해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신 후 **반드시 [로그아웃]**을 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포함)는 가까운 은행, 우체국, 증권사에서 인터넷 뱅킹, 증권거래용 인증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PC용 보안 프로그램 이용여부를 선택한 후 적용을 클릭하십시오.

☐ PC방화벽 프로그램 이용 ☐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이용 적용

※ 위 두 S/W는 PC보호와 키보드보안을 위하여 설치하는 S/W 입니다.

회원 로그인

인증서

1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 금융인증서]

- 인증서 로그인 안내

지문인증

지문인증 로그인

- 지문인증 로그인 안내

아이디 로그인

아이디

*영문, 숫자포함 6~20자리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2 비회원 로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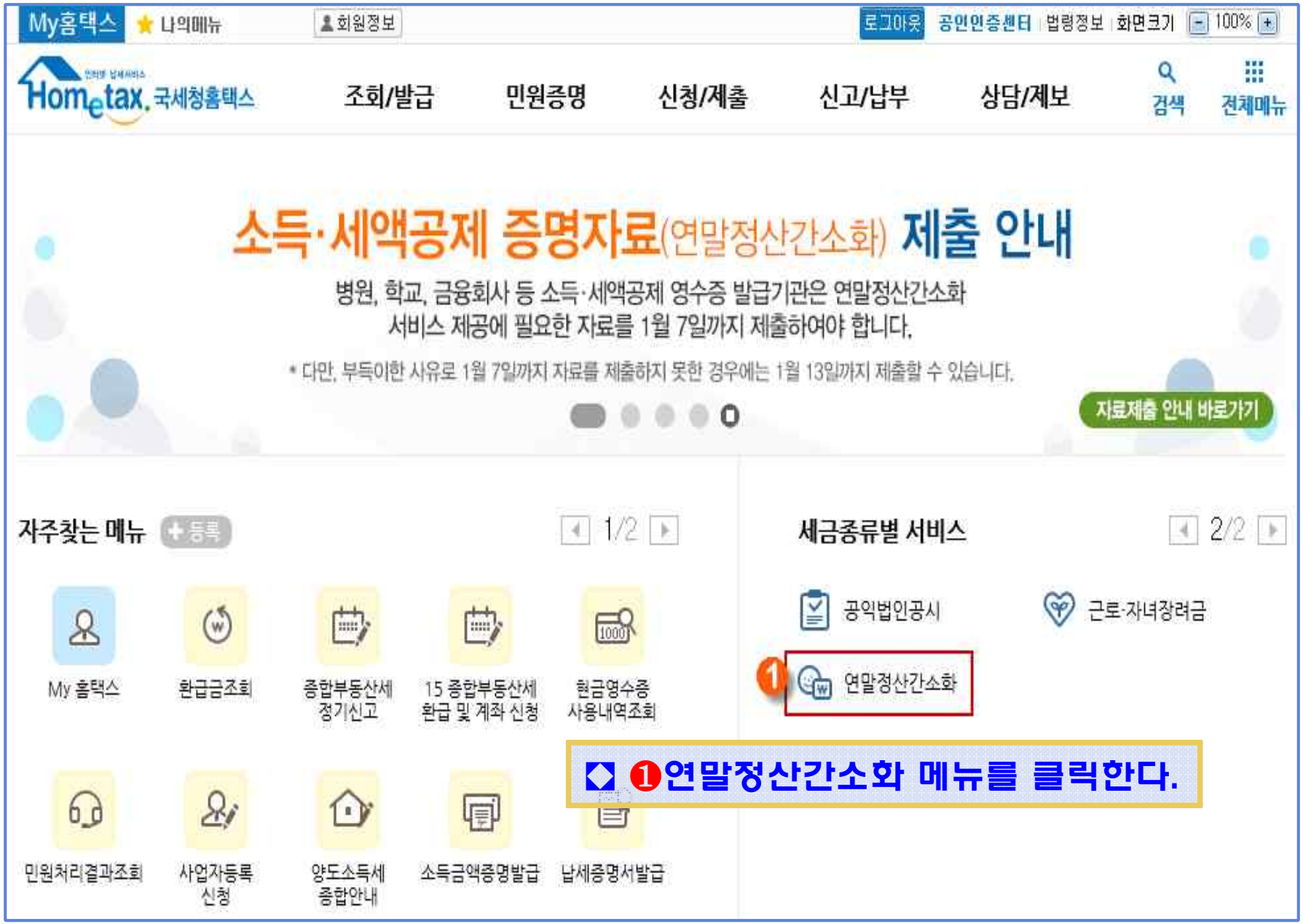
비회원 로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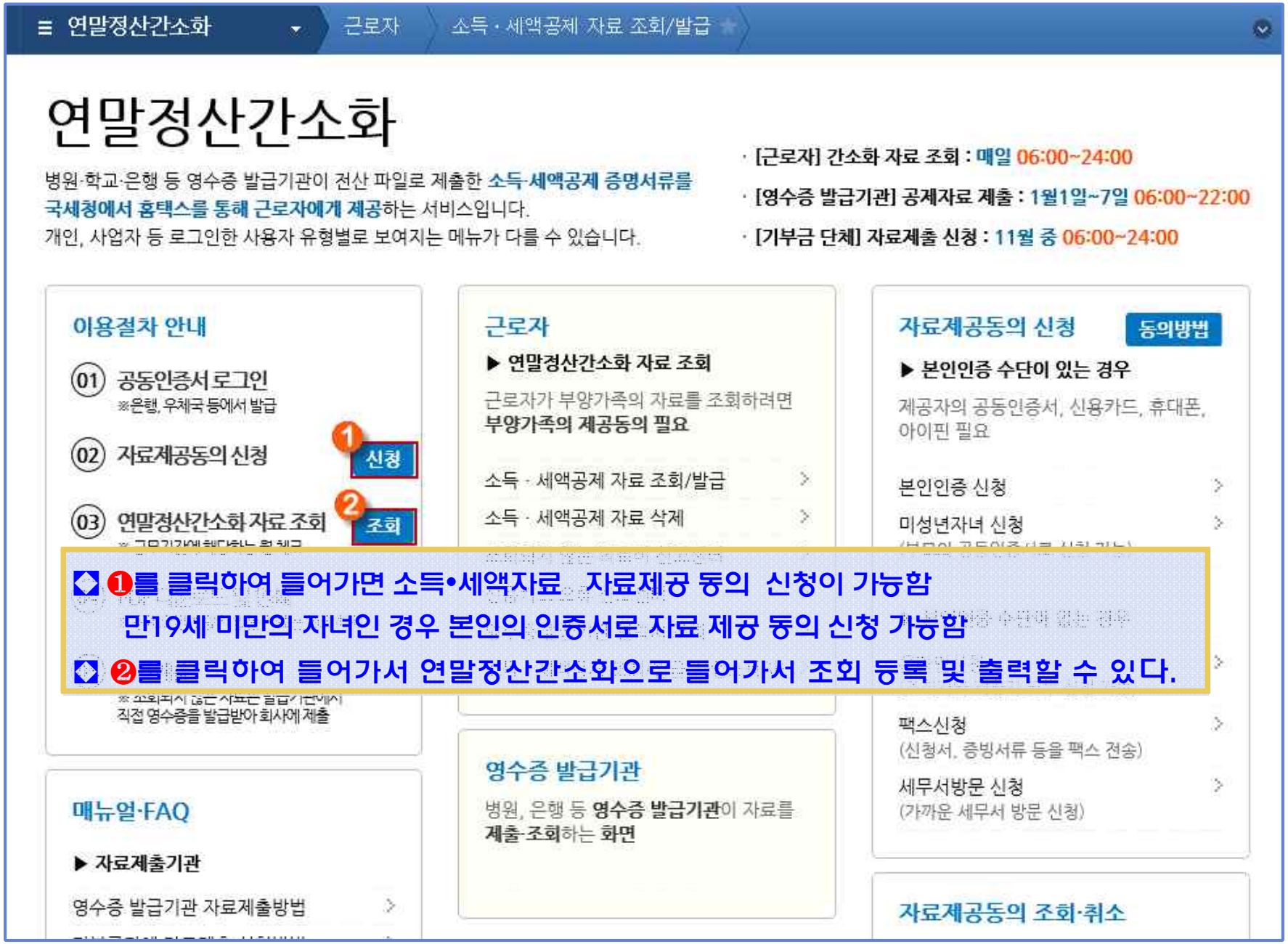
- 개인은 회원가입없이 본인인증만으로 간편하게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인증을 위하여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비회원 로그인(인증서)으로 이용가능한 메뉴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신고/납부,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조회, 연말정산 소득공제자료조회, 편리한 연말정산, 민원증명 일부 메뉴, 모의계산(양도세, 증여세), 사업장현황신고서 등

◘ ❶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고 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 ❷비회원로그인을 클릭한다.


My홈택스
나의메뉴
회원정보
로그아웃
공인인증센터
법령정보
화면크기
100%
Hometax 국세청홈택스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상담/제보
검색
전체메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연말정산간소화) 제출 안내
병원, 학교, 금융회사 등 소득·세액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료를 1월 7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월 7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1월 13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료제출 안내 바로가기
자주찾는 메뉴
+등록
1/2
My 홈택스
환급금조회
종합부동산세 정기신고
15 종합부동산세 환급 및 계좌 신청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조회
민원처리결과조회
사업자등록 신청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소득금액증명발급
납세증명서발급
세금종류별 서비스
2/2
공익법인공시
근로·자녀장려금
1
연말정산간소화
❶연말정산간소화 메뉴를 클릭한다.


≡ 연말정산간소화
근로자
소득 · 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병원·학교·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 파일로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개인, 사업자 등 로그인한 사용자 유형별로 보여지는 메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근로자] 간소화 자료 조회 : 매일 06:00~24:00
· [영수증 발급기관] 공제자료 제출 : 1월1일~7일 06:00~22:00
· [기부금 단체] 자료제출 신청 : 11월 중 06:00~24:00
이용절차 안내
01 공동인증서 로그인
※은행, 우체국 등에서 발급
02 자료제공동의 신청
1 신청
03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2 조회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
매뉴얼·FAQ
▶ 자료제출기관
영수증 발급기관 자료제출방법
근로자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부양가족의 제공동의 필요
소득 · 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
소득 · 세액공제 자료 삭제
영수증 발급기관
병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자료를 제출·조회하는 화면
자료제공동의 신청
동의방법
▶ 본인인증 수단이 있는 경우
제공자의 공동인증서, 신용카드, 휴대폰, 아이핀 필요
본인인증 신청
미성년자녀 신청
팩스신청
(신청서, 증빙서류 등을 팩스 전송)
세무서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 방문 신청)
자료제공동의 조회·취소
❶를 클릭하여 들어가면 소득•세액자료 자료제공 동의 신청이 가능함
만19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 본인의 인증서로 자료 제공 동의 신청 가능함
❷를 클릭하여 들어가서 연말정산간소화으로 들어가서 조회 등록 및 출력할 수 있다.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공동의 신청(본인인증 수단이 있는 경우)
본인인증 신청
1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
간소화 자료조회
제공동의현황조회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그 부양가족(자료제공자)의 자료제공동의가 필요합니다. - 아래 방법 중 하나를 클릭
※ 만 19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 조회자 부모 자신의 공인인증서로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합니다. - [미성년자녀 신청] 클릭
2
본인인증 신청
자료제공자(부양가족) 명의의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아이핀, 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본인 인증을 통해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3
미성년자녀 신청
만 19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 조회자 부모 자신의 공인인증서로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4
온라인 신청
자료제공자(부양가족)의 ①본인인증수단이 없거나 ②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외국인 / 최근 3개월이내 가족관계 변동)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첨부)
5
팩스 신청
자료제공자(부양가족)의 ①본인인증수단이 없거나 ②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외국인 / 최근 3개월이내 가족관계 변동)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팩스번호 : 1544-7020
6
세무서방문 신청
[첨부서류]
본인신청 : 신분증
대리인신청 :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인(정보제공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신청인이란?]
근로자의 부양가족인 자료제공자
본인인증수단
자료 조회자 (자료를 조회하는 사람 - 근로소득자)
2-1
* 성명
※한글을 공백없이 최대 15자, 영문은 공백포함하여 최대 30자까지 입력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자료 제공자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 -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
2-2
* 성명
※한글을 공백없이 최대 15자, 영문은 공백포함하여 최대 30자까지 입력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관계
은(는)
의 선택
입니다.
* 동
각각 해당화면을 클릭하여 입력 후 동의합니다에 체크 후 신청하기를 클릭한다.
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이(가)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7
8
신청하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 조회 및 출력



- ❶전체월선택를 선택하면 ❷로 조회되고 ❷전체월해제를 선택하면 ❶로 조회가 되며, 근무기간 단절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선택한다.
- ❸ 을 클릭하면 ❹금액이 조회되니 각각 클릭하여 금액이 조회가 되면 ❺ PDF를 다운로드하고 ❻ 인쇄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인쇄한다.
  다운로드 저장
- 내용확인에서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출력하지 않은 것을 선택해제 후 다운로드 및 인쇄하기를 시행한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자 확인 및 안경구매정보등록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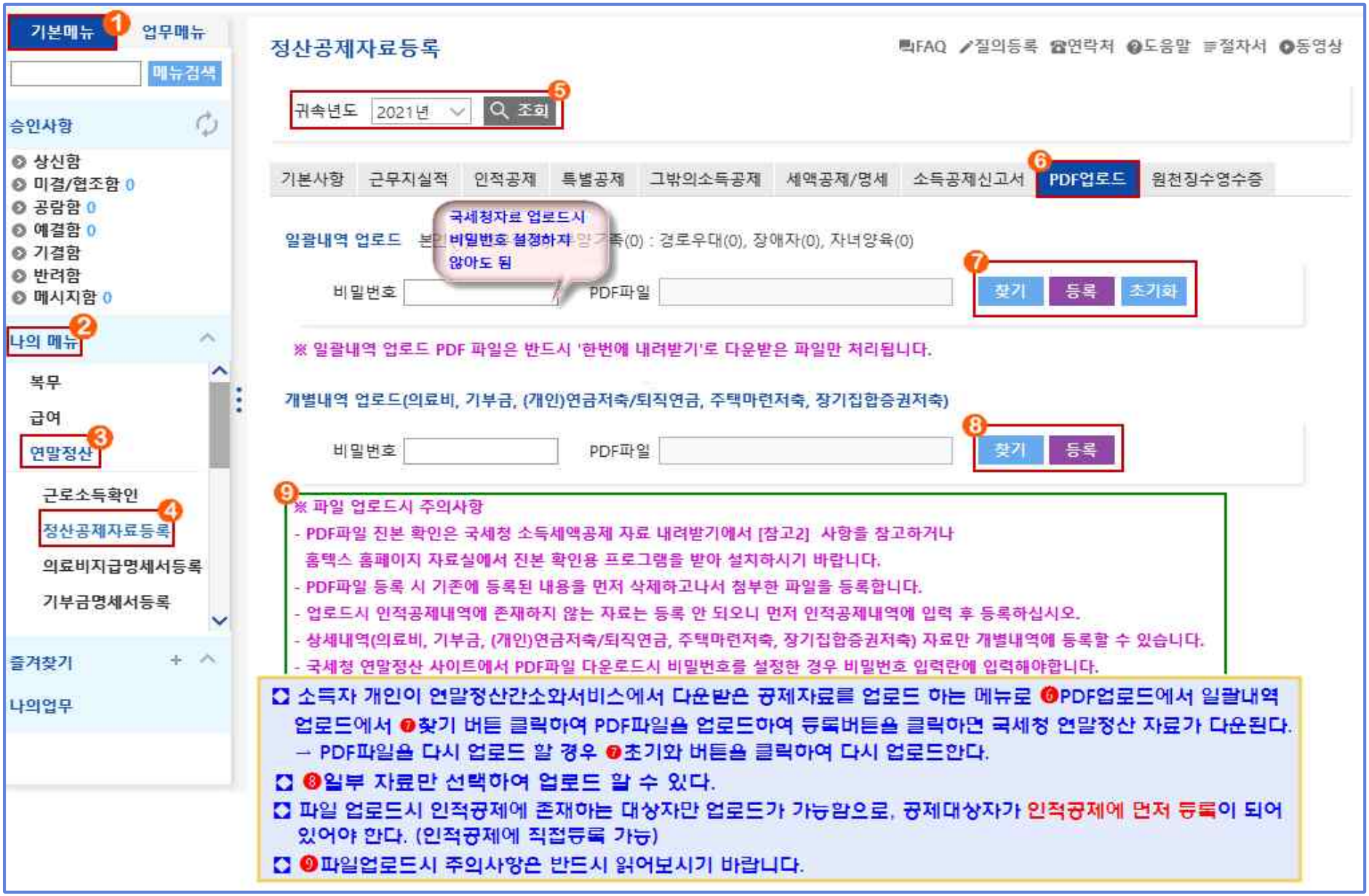


연말정산 NEIS 확인 및 입력

근로소득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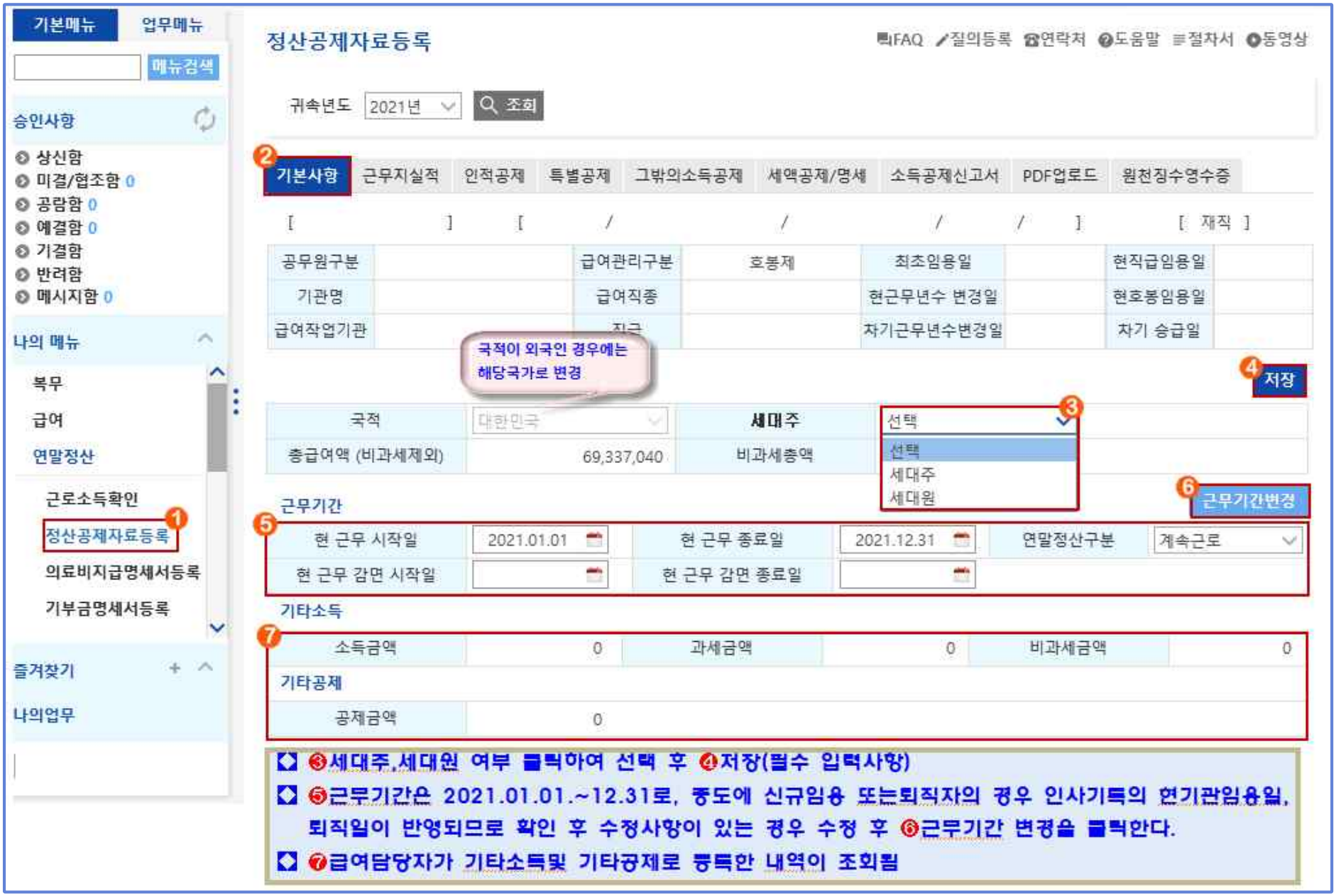

기본메뉴
업무메뉴
메뉴검색
승인사항
상신함
미결/협조함 0
공람함 0
예결함 0
기결함
반려함
메시지함 0
나의 메뉴
복무
급여
연말정산
근로소득확인
정산공제자료등록
의료비지급명세서등록
기부금명세서등록
즐겨찾기
나의업무
근로소득확인
FAQ
질의등록
연락처
도움말
절차서
동영상
귀속년도 2021년
종전(현)근무지자료
조회
2021년도 종전(현)근무지 자료
사업자번호
근무 시작
근무 종료
급여총액
상여총액
비과세총액
그 밖의 비과세
주(현)조합납입금액
중소기업취업 소득세감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기여금 (사학연금)
202101 4,489,880 2,283,990 0 150,000 0 0 227,980 0 0 0
202102 7,328,240 293,240 0 150,000 0 0 227,980 0 0 0
202103 4,742,200 3,082,160 0 150,000 0 0 227,980 0 0 0
202104 4,556,020 293,240 0 150,000 0 0 257,590 0 0 0
202105 4,599,820 920,880 0 150,000 0 0 231,700 0 0 0
202106 4,859,230 293,240 0 150,000 0 0 231,700 0 0 0
202107 4,594,110 2,283,990 0 150,000 0 0 231,700 0 0 0
202108 4,556,020 293,240 0 150,000 0 0 231,700 0 0 0
202109 6,944,920 293,240 0 150,000 0 0 231,700 0 0 0
202110 4,556,020 293,240 0 150,000 0 0 231,700 0 0 0
0 0 0
0 0 0
0 0 0
페이지 1/1
PM 3:54
5조회버튼을 클릭하면 해당년도 소득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V버튼을 클릭하면 본인의 급여외 기타소득등록자료도 확인이 가능하다.
– 연말정산담당자가 연말정산 대상자생성 및 기초자료생성작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

정산공제자료 등록 → PDF파일 업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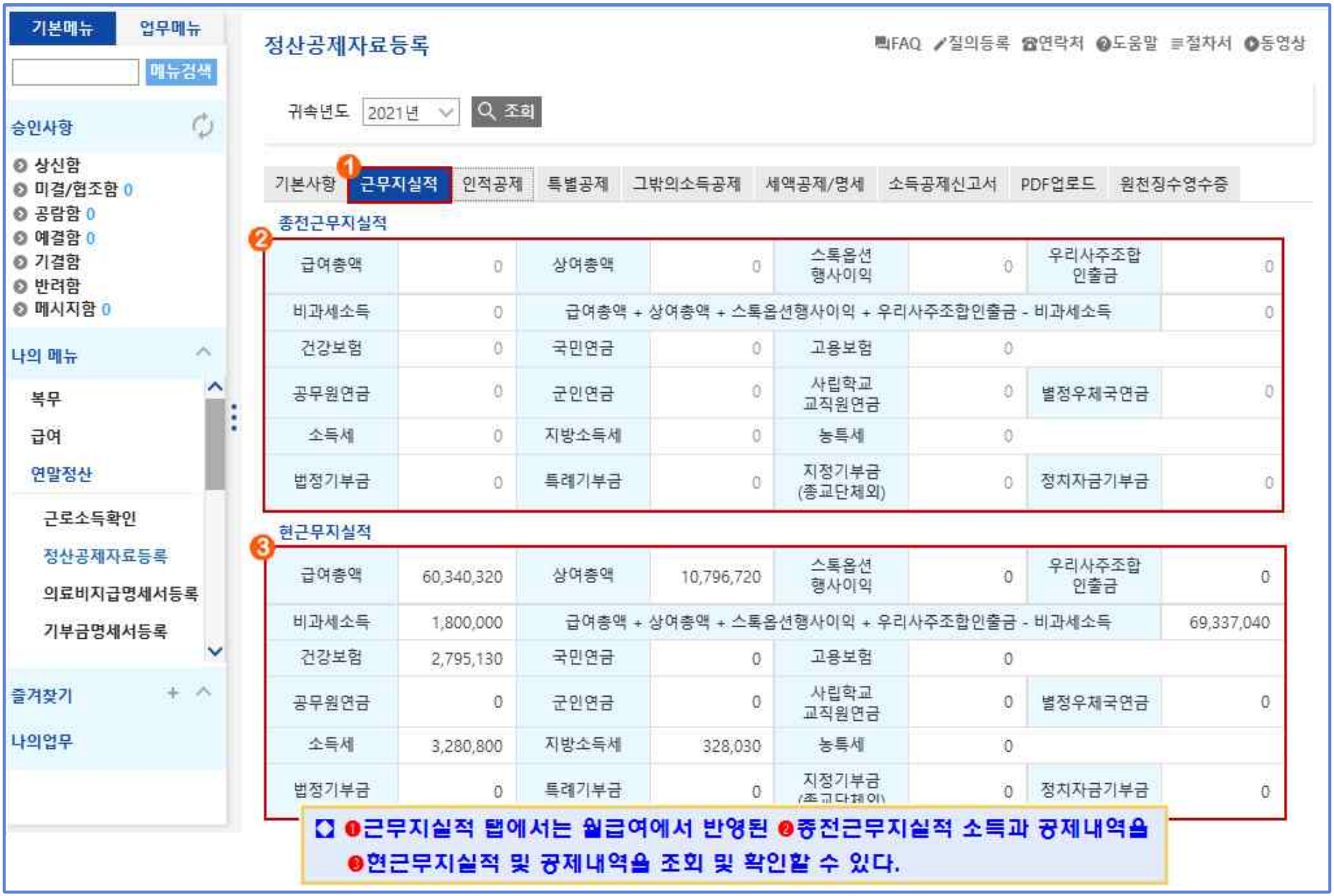


- 소득자 개인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다운받은 공제자료를 업로드 하는 메뉴로 ❻PDF업로드에서 일괄내역 업로드에서 ❼찾기 버튼 클릭하여 PDF파일을 업로드하여 등록버튼을 클릭하면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가 다운된다.
  → PDF파일을 다시 업로드 할 경우 ❼초기화 버튼을 클릭하여 다시 업로드한다.
- ❽일부 자료만 선택하여 업로드 할 수 있다.
- 파일 업로드시 인적공제에 존재하는 대상자만 업로드가 가능함으로, 공제대상자가 인적공제에 먼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인적공제에 직접등록 가능)
- ❾파일업로드시 주의사항은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산공제자료 등록 → 기본사항



정산공제자료 등록 → 근무지실적



종전근무지실적

급여총액	0	상여총액	0	스톡옵션 행사이익	0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0
비과세소득	0	급여총액 + 상여총액 + 스톡옵션행사이익 + 우리사주조합인출금 - 비과세소득					0
건강보험	0	국민연금	0	고용보험	0		
공무원연금	0	군인연금	0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0	별정우체국연금	0
소득세	0	지방소득세	0	농특세	0		
법정기부금	0	특례기부금	0	지정기부금 (종교단체외)	0	정치자금기부금	0

현근무지실적

급여총액	60,340,320	상여총액	10,796,720	스톡옵션 행사이익	0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0
비과세소득	1,800,000	급여총액 + 상여총액 + 스톡옵션행사이익 + 우리사주조합인출금 - 비과세소득					69,337,040
건강보험	2,795,130	국민연금	0	고용보험	0		
공무원연금	0	군인연금	0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0	별정우체국연금	0
소득세	3,280,800	지방소득세	328,030	농특세	0		
법정기부금	0	특례기부금	0	지정기부금 (종교단체외)	0	정치자금기부금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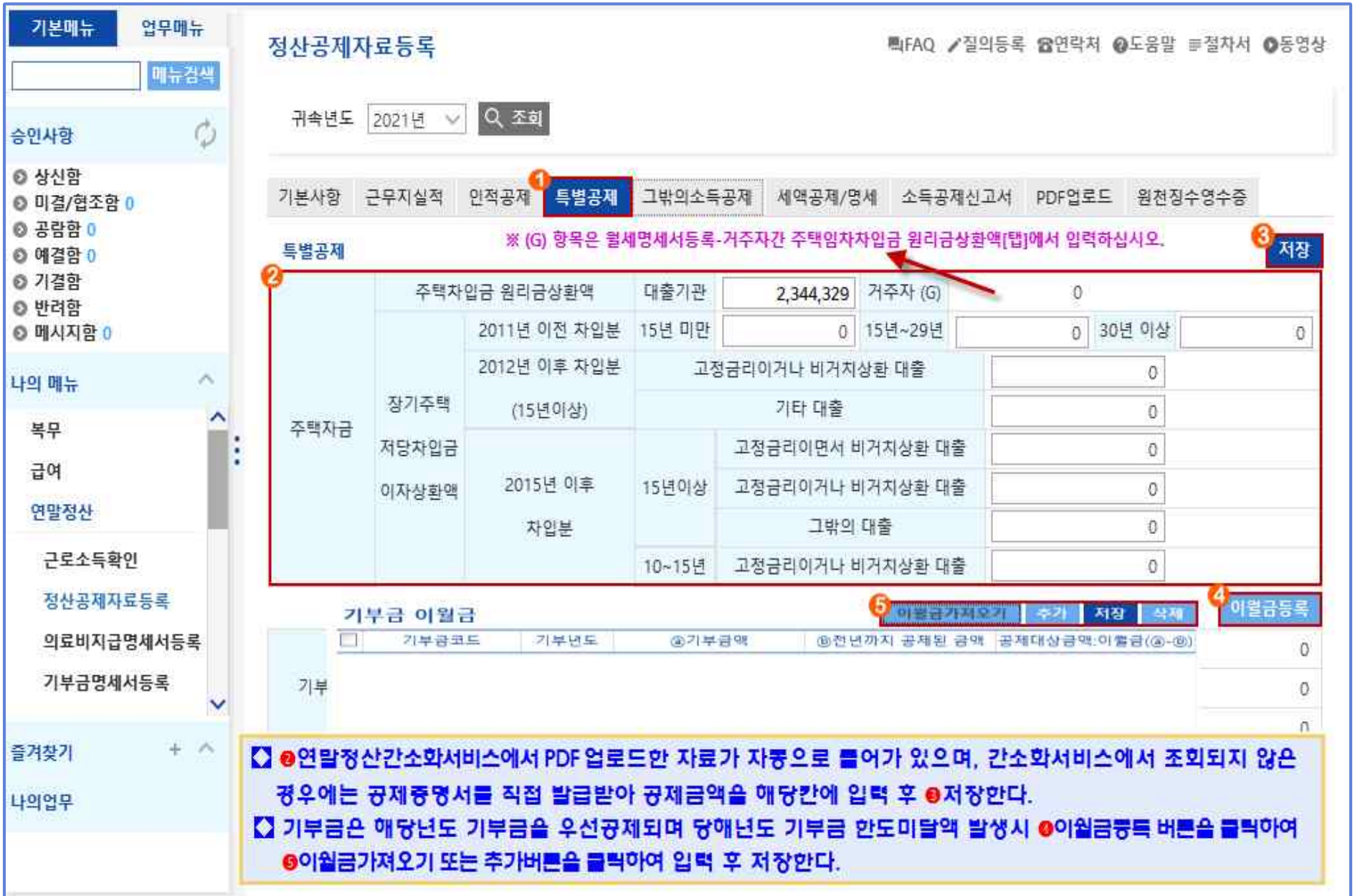
❶근무지실적 탭에서는 월급여에서 반영된 ❷종전근무지실적 소득과 공제내역을
❸현근무지실적 및 공제내역을 조회 및 확인할 수 있다.

정산공제자료 등록 → 인적공제




기본메뉴
업무메뉴
메뉴검색
승인사항
상신함
미결/협조함 0
공람함 0
예결함 0
기결함
반려함
메시지함 0
나의 메뉴
복무
급여
연말정산
근로소득확인
정산공제자료등록
의료비지급명세서등록
기부금명세서등록
즐겨찾기
나의업무
정산공제자료등록
FAQ 질의등록 연락처 도움말 절차서 동영상
귀속년도 2021년 조회
기본사항 근무지실적 인적공제 특별공제 그밖의소득공제 세액공제/명세 소득공제신고서 PDF업로드 원천징수영수증
인적공제
인적공제추가 삭제 저장
성명
각종 소득공제 항목(국세청자료/그밖의자료)
소득공제관계
주민등록번호
현금영수증 (전통시장·대중교통비 제외)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 이용액
도서·공연 등 사용금액
신용카드 사용분
직불카드 사용분
현금영수증 사용분
기부금
본인
591,469 2,589,450 357,800 351,200 0 0 180,000
0 0 0 0 0 0 20,000
소득자의직계존속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직계비속 자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합 계
❷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PDF 업로드한 자료가 자동으로 들어가 있으며
❹국세청 외 자료를 해당되는 칸에 입력 후(안경구입비, 기부금 등) ❺저장한다.
※ 기본공제 : 직계존속(만 60세이상), 형제자매(만 60세이상 만 20세이하), 직계비속(만 20세이하, 배우자 그밖의 부양가족은 소득 500만원이하)
※ 건강, 고용등 값에 마이너스값이 나오는 경우 0 으로 수정 하십시요.
※ 국세청 PDF 파일에서 제공하지 않은 자료는 각 항목의 아래칸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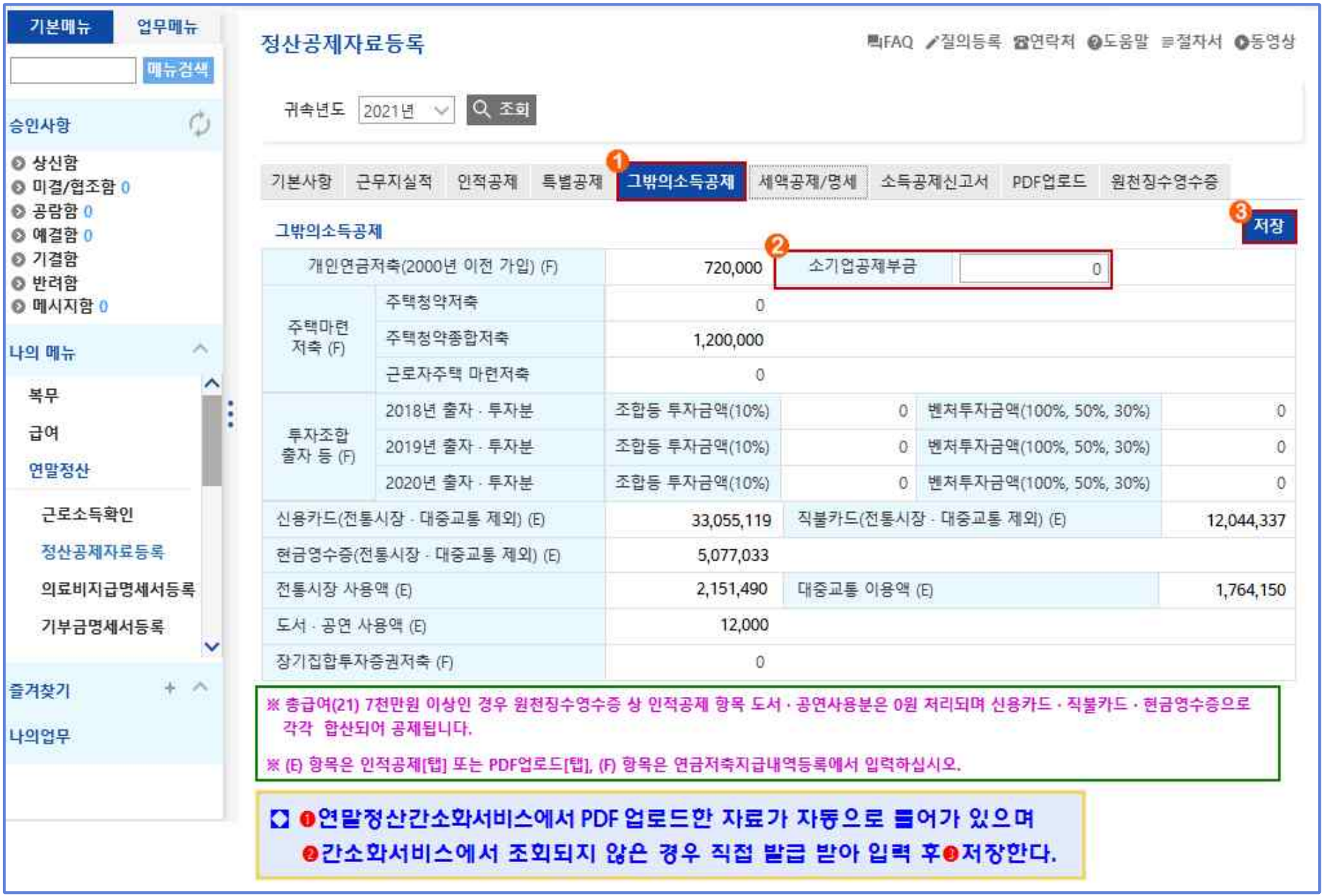
정산공제자료 등록 → 특별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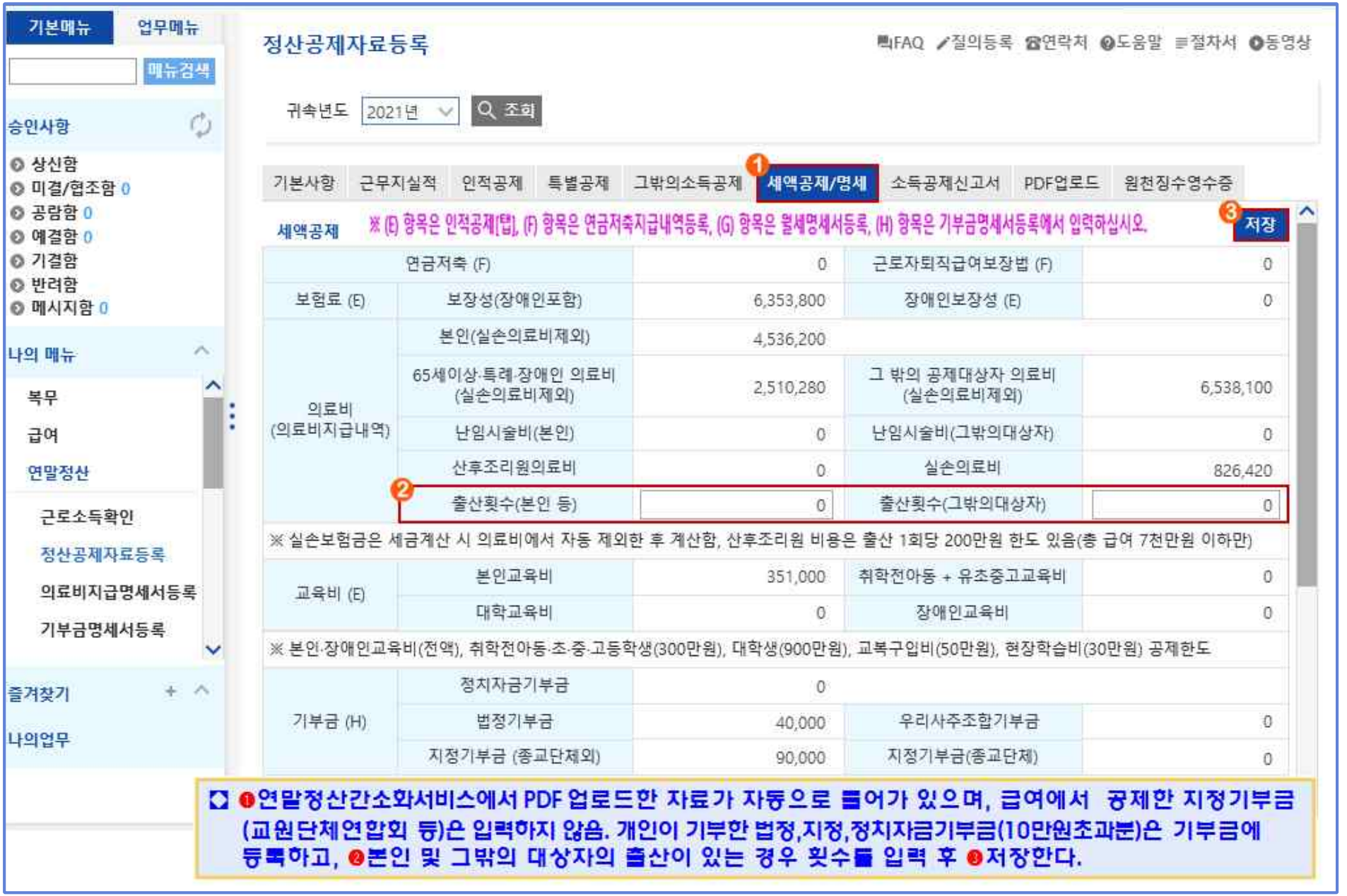
◆ ❷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PDF 업로드한 자료가 자동으로 불어가 있으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공제금액을 해당칸에 입력 후 ❸저장한다.

◆ 기부금은 해당년도 기부금을 우선공제되며 당해년도 기부금 한도미달액 발생시 ❹이월금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❺이월금가져오기 또는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입력 후 저장한다.

정산공제자료 등록 → 그밖의소득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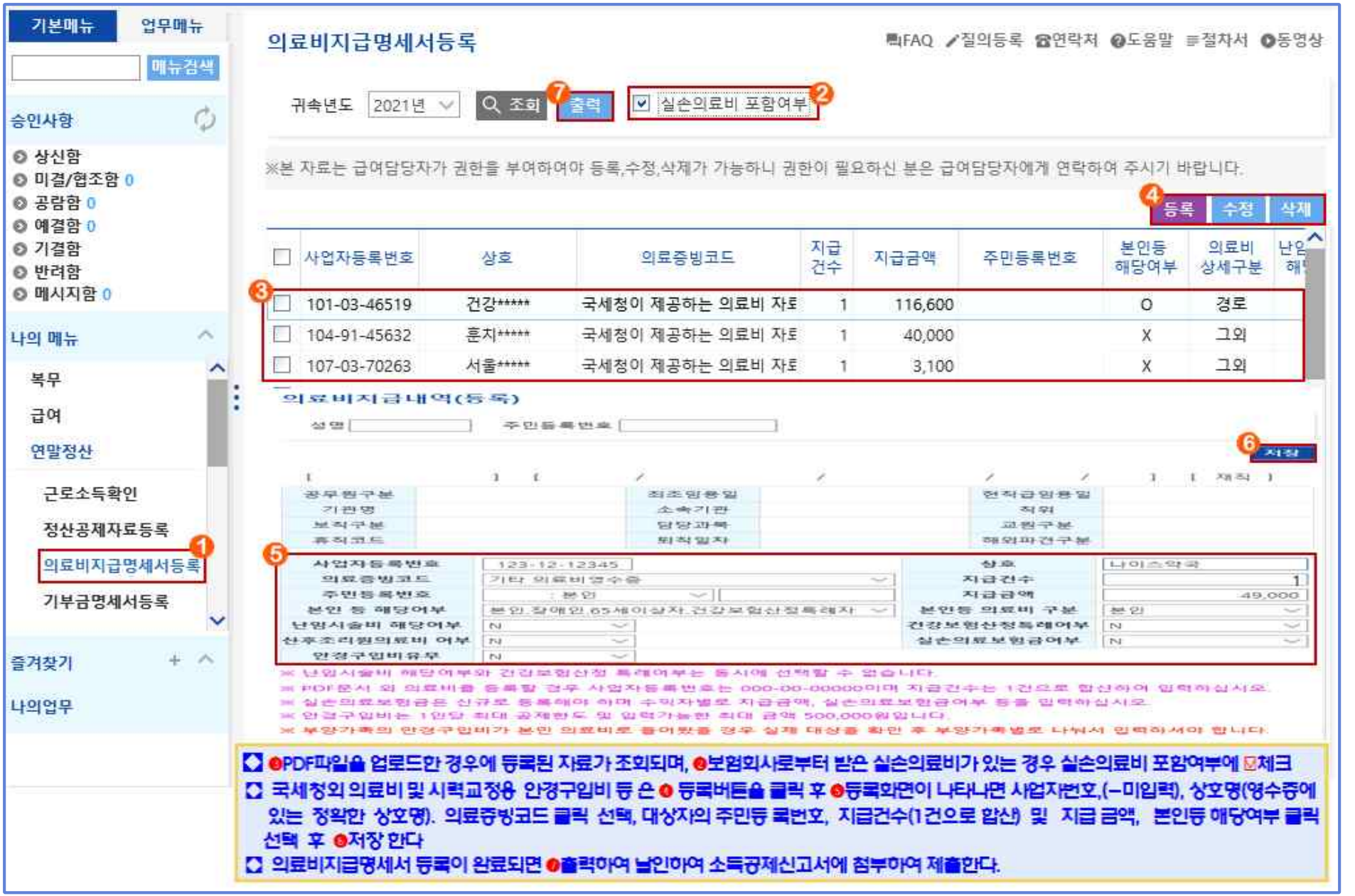


정산공제자료 등록 → 세액공제/명세



❶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PDF 업로드한 자료가 자동으로 들어가 있으며, 급여에서 공제한 지정기부금(교원단체연합회 등)은 입력하지 않음. 개인이 기부한 법정,지정,정치자금기부금(10만원초과분)은 기부금에 등록하고, ❷본인 및 그밖의 대상자의 출산이 있는 경우 횟수를 입력 후 ❸저장한다.

의료비지급명세서등록



- ❻PDF파일을 업로드한 경우에 등록된 자료가 조회되며, ❷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실손의료비가 있는 경우 실손의료비 포함여부에 ☑체크
- 국세청외 의료비 및 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 등 은 ❹ 등록버튼을 클릭 후 ❺등록화면이 나타나면 사업자번호,(–미입력), 상호명(영수증에 있는 정확한 상호명). 의료증빙코드 클릭 선택, 대상자의 주민등 록번호, 지급건수(1건으로 합산) 및 지급 금액, 본인등 해당여부 클릭 선택 후 ❻저장 한다
- 의료비지급명세서 등록이 완료되면 ❼출력하여 날인하여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기부금명세서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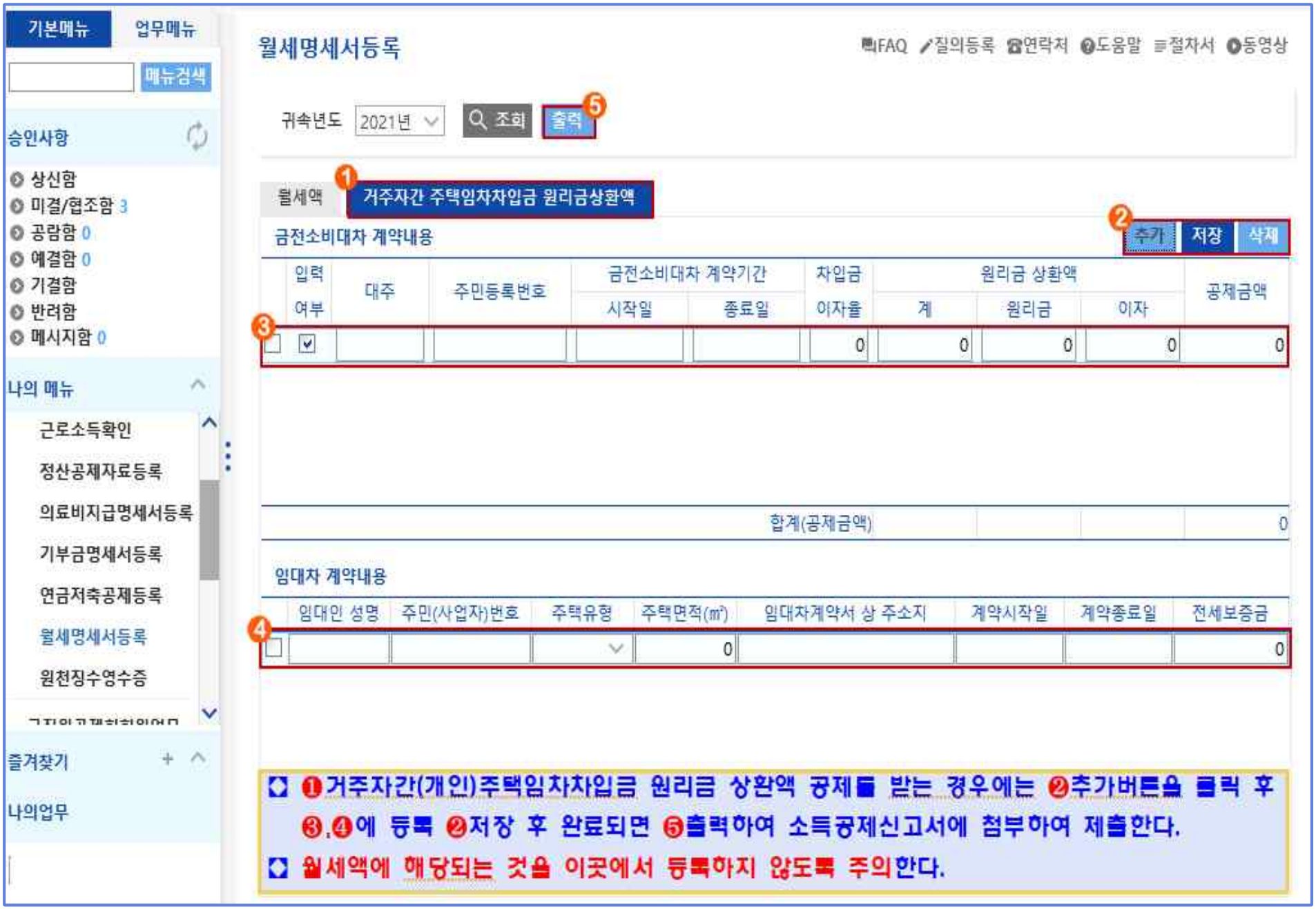

기본메뉴
업무메뉴
메뉴검색
승인사항
상신함
미결/협조함 0
공람함 0
예결함 0
기결함
반려함
메시지함 0
나의 메뉴
복무
급여
연말정산
근로소득확인
정산공제자료등록
의료비지급명세서등록
기부금명세서등록 1
즐겨찾기
나의업무
기부금명세서등록
FAQ 질의등록 연락처 도움말 절차서 동영상
귀속년도 2021년 조회 출력 6
※본 자료는 급여담당자가 권한을 부여하여야 등록,수정,삭제가 가능하니 권한이 필요하신 분은 급여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조정명세서 5
3 추가 저장 삭제
4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상호 지급구분 지급건수 지급금액 기부장려금 공제대상금액 기부자관계
116-82-00276 사회복지법인월드비전 고단체외 지정기부금(4 1 90,000 0 90,000 본인
116-83-00138 국가보훈처 법정기부금(10) 1 10,000 0 10,000 본인
206-82-00400 한양대학교 법정기부금(10) 1 30,000 0 30,000 본인
PDF파일을 업로드하면 국세청자료는 4자동 등록됨
개인이 납부한 기부금 있는 경우 3추가버튼을 클릭 입력 후 저장한다.
5기부금명세서에 등록된 화면과 동일하게 조회됨
4등록이 완료되면 6출력하여 서명 날인 후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
입력시 유의사항
합계(기부금명세등록금액) 0 0 0 0
※ 정치자금은 기부처 구분 없이 사업연도 합계액을 기입하고,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 사업자(주민)등록번호는 하이픈(-)없이 숫자만 입력 해야하며 기부자 주민등록번호는 인적공제[탭]에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해야합니다.

연금저축공제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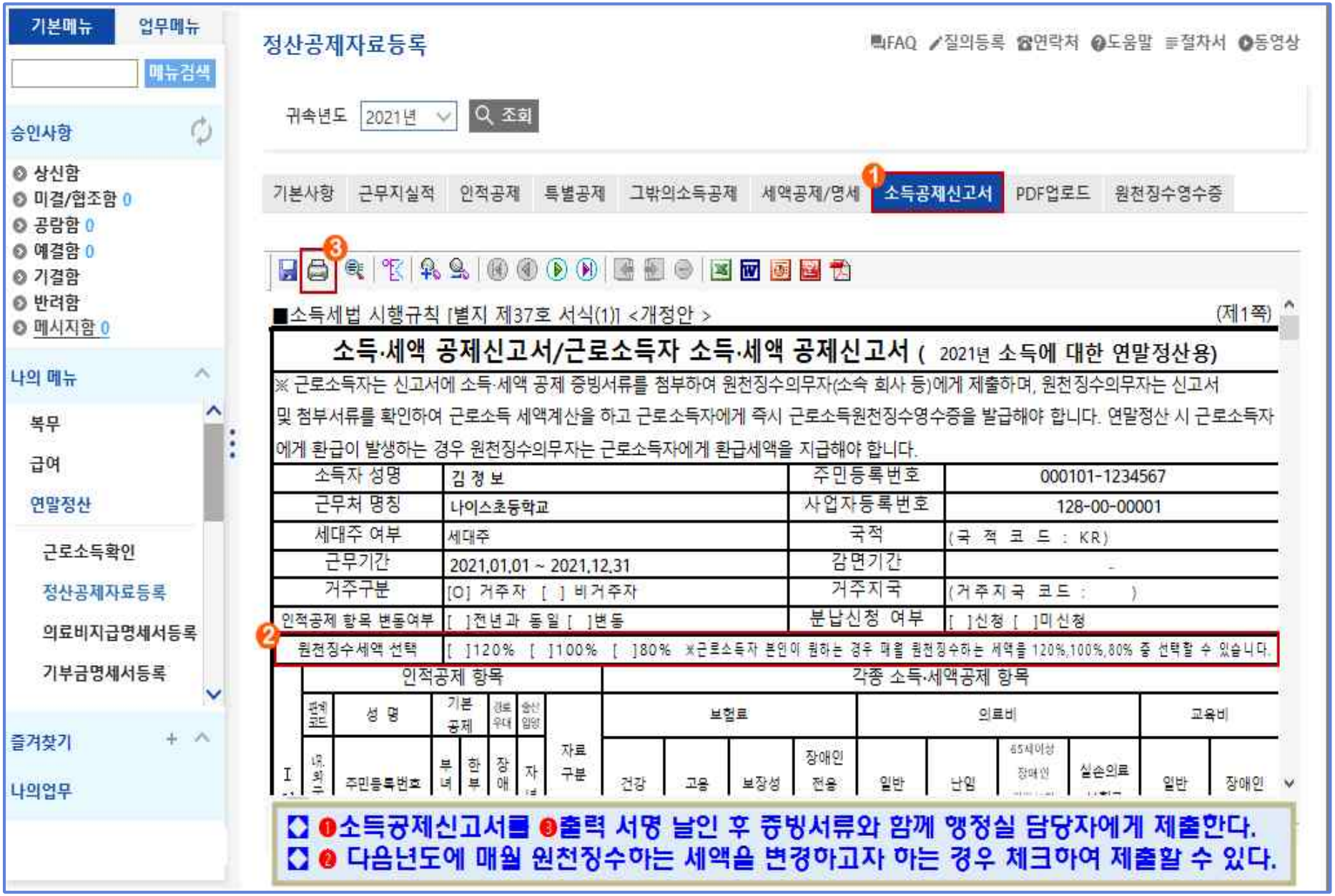

기본메뉴
업무메뉴
메뉴검색
승인사항
상신함
미결/협조함 0
공람함 0
예결함 0
기결함
반려함
메시지함 0
나의 메뉴
근로소득확인
정산공제자료등록
의료비지급명세서등록
기부금명세서등록
연금저축공제등록
월세명세서등록
원천징수영수증
즐겨찾기
나의업무
연금저축공제등록
FAQ 질의등록 연락처 도움말 절차서 동영상
귀속년도 2021년
조회
출력
※본 자료는 급여담당자가 권한을 부여하여야 추가,저장,삭제가 가능하니 권한이 필요하신 분은 급여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저장
삭제
연금저축구분
금융회사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불입금액
공제금액
투자년도
투자구분
펀드유무
개인연금저축
삼성증권주식회사
12345678
3,000,000
0
근로자퇴직급여보장
새마을금고
0
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인연금저축
청약저축
연금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PDF파일을 업로드하면 국세청자료는 ❸자동 등록됨
국세청자료외는 ❷추가버튼을 클릭 ❹연금저축구분을 클릭 선택 입력 후 ❷저장한다.
❹등록이 완료되면 ❺출력하여 서명 날인 후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
합계(연금정산등록금액)
3,000,000
0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에서 펀드유무가 Y인 경우 공제금액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월세명세서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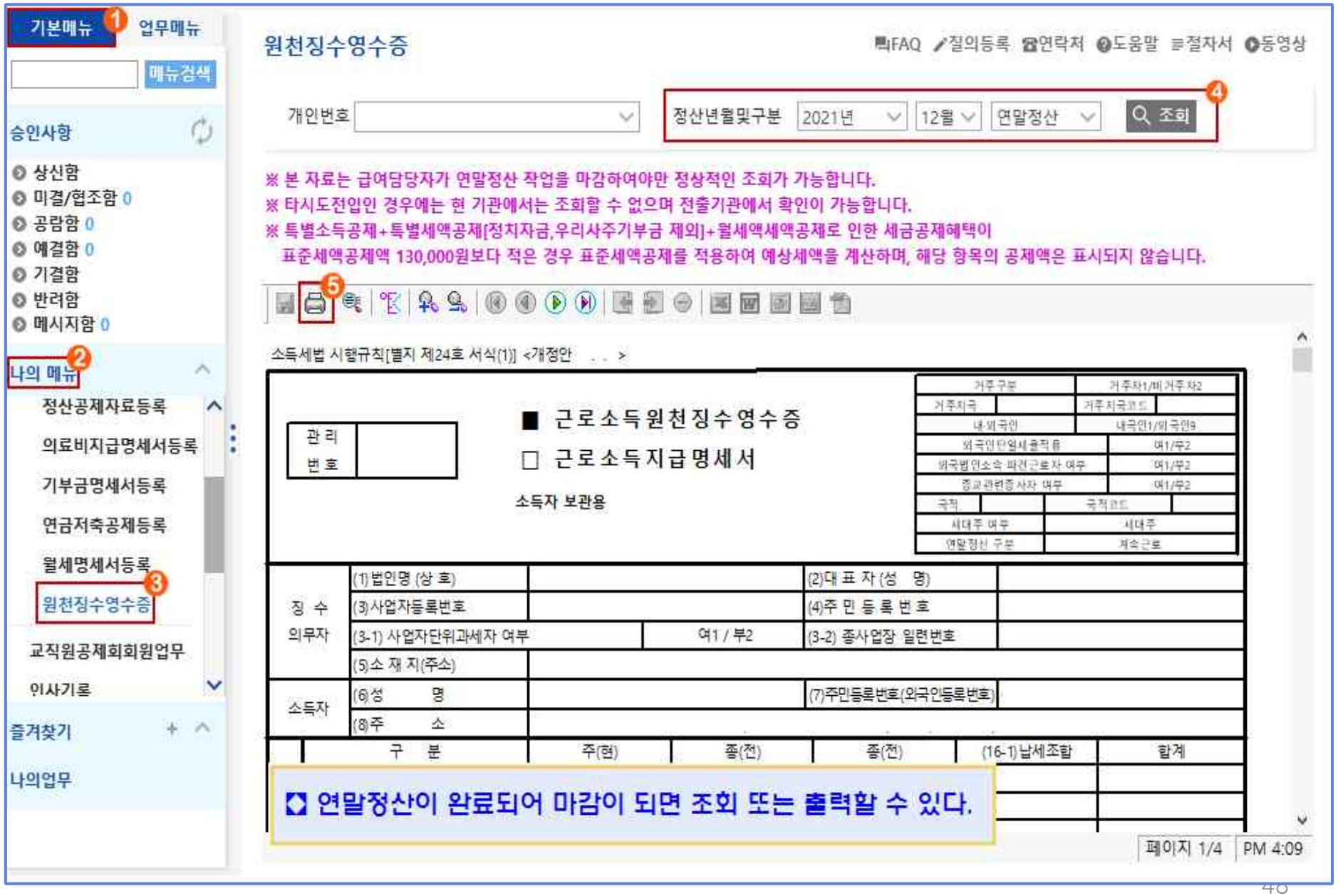

기본메뉴
업무메뉴
메뉴검색
승인사항
상신함
미결/협조함 3
공람함 0
예결함 0
기결함
반려함
메시지함 0
나의 메뉴
근로소득확인
정산공제자료등록
의료비지급명세서등록
기부금명세서등록
연금저축공제등록
월세명세서등록
원천징수영수증
즐겨찾기
나의업무
월세명세서등록
FAQ
질의등록
연락처
도움말
절차서
동영상
귀속년도
2021년
조회
출력
월세액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월세액 소득공제
추가
저장
삭제
입력 여부
임대인 성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주 택 유 형
주택계약 면 적(㎡)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
임대인 계약기간 사작일
김정보
123456-7891234
아파트
84
나이스시 아니스로 1004번지
2021.01.
1
2
3
4
5
근로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소득자는 ❷월세액 탭에서 ❸추가버튼을 클릭 후 ❹임대인성명, 임대인주민등록번호(-없이 입력),주택유형,주택계약면적,임대차계약서상주소지,임대인계약 기간,월세액(한도금액입력),공제금액을 입력 후 ❸저장한다.
완료되면 ❺출력하여 서명 날인 후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
주택유형이 오피스텔 및 고시원(주거용)도 공제 가능
750만원 한도내에서 총급여 7,000만원이하는 10%의 75만원,5,500만원이하는 12%의 90만원 공제


기본메뉴
업무메뉴
메뉴검색
승인사항
상신함
미결/협조함 3
공람함 0
예결함 0
기결함
반려함
메시지함 0
나의 메뉴
근로소득확인
정산공제자료등록
의료비지급명세서등록
기부금명세서등록
연금저축공제등록
월세명세서등록
원천징수영수증
즐겨찾기
나의업무
월세명세서등록
FAQ
질의등록
연락처
도움말
절차서
동영상
귀속년도
2021년
조회
출력
5
월세액
1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
2
추가
저장
삭제
입력 여부
대주
주민등록번호
금전소비대차 계약기간
시작일
종료일
차입금
이자율
원리금 상환액
계
원리금
이자
공제금액
3
0
0
0
0
0
합계(공제금액)
0
임대차 계약내용
임대인 성명
주민(사업자)번호
주택유형
주택면적(㎡)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
계약시작일
계약종료일
전세보증금
4
0
0
❶거주자간(개인)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❷추가버튼을 클릭 후
❸,❹에 등록 ❷저장 후 완료되면 ❺출력하여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월세액에 해당되는 것을 이곳에서 등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정산공제자료 등록 → 소득공제신고서



원천징수영수증


기본메뉴 1
업무메뉴
메뉴검색
승인사항
상신함
미결/협조함 0
공람함 0
예결함 0
기결함
반려함
메시지함 0
나의 메뉴 2
정산공제자료등록
의료비지급명세서등록
기부금명세서등록
연금저축공제등록
월세명세서등록
원천징수영수증 3
교직원공제회회원업무
인사기록
즐겨찾기
나의업무
원천징수영수증
FAQ 질의등록 연락처 도움말 절자서 동영상
개인번호
정산년월및구분 2021년 12월 연말정산 조회 4
※ 본 자료는 급여담당자가 연말정산 작업을 마감하여야만 정상적인 조회가 가능합니다.
※ 타시도전입인 경우에는 현 기관에서는 조회할 수 없으며 전출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정치자금,우리사주기부금 제외]+월세액세액공제로 인한 세금공제혜택이
표준세액공제액 130,000원보다 적은 경우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예상세액을 계산하며, 해당 항목의 공제액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5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 서식(1)] <개정안
관리 번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소득자 보관용
징수의무자
소득자
(1)법인명(상호)
(2)대표자(성명)
(3)사업자등록번호
(4)주민등록번호
(3-1) 사업자단위과세자 여부
여1 / 부2
(3-2) 종사업장 일련번호
(5)소재지(주소)
(6)성명
(7)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8)주소
구분
주(현)
종(전)
종(전)
(16-1)납세조합
합계
연말정산이 완료되어 마감이 되면 조회 또는 출력할 수 있다.
페이지 1/4
PM 4:09



감사합니다.^^